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5일, 최민희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 6.)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민희의원)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서만 스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광고성 정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는 문자재판매사업자 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 문자중계사업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아닌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